

창원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1가단1143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C

피 고 D

변 론 종 결 2022. 10. 21.

판 결 선 고 2022. 1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2. 26. 접수 제97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E(이하 ‘E’라고 한다)가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와 거래를 함에 있어 E가

주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9. 11. 5. 보험가입금액 110,000,000원, 보험기간 2019. 11. 1.부터 2021. 10. 31., 보증내용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으로 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E의 대표자 B은 E의 위 보증보험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E가 외상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F가 2021. 3. 30. 원고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21. 4. 15. F에 보험금 109,815,659원을 지급하였다.

다. B은 당시 연대보증채무, 사업운영자금 관련 채무 등 소극재산이 원금으로만 약 22억 원이 넘는 데 반하여 그 적극재산으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21. 2. 24.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2. 26. 접수 제974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라. B은 2021. 4. 14. 창원지방법원 2021하단517, 하면51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21. 10. 17. 파산선고가 이루어졌으며,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6,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4, 갑 5호증의 1, 2, 갑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 회생법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는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하는 것은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행위로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서 부인대상 행위에 해당하고, B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20. 10. 5. B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25. 10. 5.,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날 공증인 G 작성 2020년 증제44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던 사실, ② 피고는 2021. 2. 24.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35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선순위 전세보증금 합계 60,000,000원과 H조합의 채권최고액 216,000,000원(실 채무액 176,500,000원)의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여, 계약금 113,500,000원은 피고가 B으로부터 받아야 할 대여금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잔금 236,500,000원은 위 전세보증금 60,000,000원과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176,500,000원 합계 236,50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같음하여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는 2025. 10. 5.임에도 불구하고 변제기 도래 전인 2021. 2. 24.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계약금의 지급에 같음하여 위 대여금을 일부 변제하고,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파산면책신청을 하였던 것을 볼 때, 원고로서는 채무자 회생법 제391조 제3호에 의해서도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로서 이와 같이 대여금을 일부 변제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정당한 가격에 매수한 것일 뿐 B의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391조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파산관재인인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2. 26. 접수 제97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부인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연